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24 발의연월일: 2022. 6. 23.

발 의 자:노용호·권성동·김용판

박대수 · 박정하 · 유경준

유상범 • 이양수 • 이철규

조명희 · 지성호 · 한기호

한무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산악관광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 행정조직 설치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출범 초기 안정적 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제주 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법 제정 당시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의 적극 협력 의무를 명시해 원활한 출범을 지원한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정부와"를 "국무총리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부는"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 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3(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②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정 무총리와-----부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 | 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 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 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신 설> 위원회 설치) 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 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사항
-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 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 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을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

<신 설>

임받은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 원단을 둔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 이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